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2024학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12인	감사정수	2인
재적이사	12인	재적감사	2인
출석이사	10인	출석감사	2인

I.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오후 2시
(회의 소집 통보일 : 2024년 11월 28일)

II. 장 소 : 서강대학교 본관 4층 대회의실

III. 임원 출석 현황

참석 임원

- 이사(10) : 김광호, 나현오, 오진환, 우재명, 이근상, 전성빈, 전주희, 조인영, 최현만, 한상대
- 감사(2) : 고희관, 양호승

불참 임원

- 이사(2) : 심종혁, 윤승한

IV. 부의 안건

승인 안건

1. 제17대 총장 선출의 건
2. 임원 선임의 건
3.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 개정의 건
4.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5. 교원 및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6. 학교법인 행정규정 개정의 건

7. 대학원 학칙 개정의 건
8. 교비회계 장기 미회수 채권 제각의 건
9. 하비에르관(X관) 5층 베란다 공간 증축 공사 승인의 건
10. 산학협력단 보유주식 매각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11. 학장 인준의 건
12. 교원 인사행정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의 건
13. 2025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재계약/승진/정년보장 심사의 건
14. 2025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의 건
15. 기타 - 회의록 간인의 건

□ 보고 안건

16.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건의사항 제출의 건
17. 교원 인사 관련 보고의 건
18. 대학 인문역량강화사업(CORE) 학업지원금 반환의 건

V. 회의 내용

- 전차 이사회 회의록(2024학년도 제4차)은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함.
- 이사회는 2025년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이사회 회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일 시	주요 안건
2월 12일 (수), 오후 2시	예산 이사회
4월 30일 (수), 오후 2시	결산 이사회
6월 26일 (목), 오후 2시	교원 임용, 승진·재계약
9월 25일 (목), 오후 2시	정기 이사회
12월 9일 (화), 오후 2시	교원 임용, 승진·재계약

□ 승인 안건

1. 제17대 총장 선출의 건

이사회는 학교법인 정관 제43조의2에 의거 서강대학교 제17대 총장 선출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자 심종혁 신부의 소견 발표를 듣고, 이사들과 총장후보자 간의 면담을 진행한 후 총장후보자는 퇴장하였음.

이후,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장 임지봉 교수가 입장하여 총장후보자를 추천한 과정을 설명하고, 이사들은 총장 선출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음.

이사회는 서강대학교 제17대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참석 이사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 총장후보자에 대하여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차기 총장으로 선출할 것을 의결함.

참석이사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와 감사 2인의 개표를 거쳐 이사회는 심종혁 신부(예수회)를 서강대학교 제17대 총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함. 임기는 2025년 2월 1일부터 4년간으로 정함.

(제안이사 우재명, 동의이사 조인영, 재청이사 최현만 / 찬성 10인, 반대 0인)

※ 한상대 이사는 1번 안건 의결 후 개인 사정으로 퇴장함.

2. 임원 선임의 건

이사회는 서강대학교 제17대 총장으로 선출된 심종혁 신부를 재임하는 기간(총장 임기 : 2025년 2월 1일 ~ 2029년 1월 31일) 동안 당연직 이사(교육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함.

구분	성명	임기	비고
이사(총장)	심종혁	2025. 2. 1. ~ 2029. 1. 31.	교육이사

(제안이사 우재명, 동의이사 조인영, 재청이사 전성빈 / 찬성 9인, 반대 0인)

3.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 개정의 건

이사회는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 개정의 건을 심의한 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개정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1) 주요 개정 내용

- 학교법인의 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과 일치하도록 단서를 추가함.
- 제25조(임원 등 선임의 제한),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및 제30조(임원 겸직금지)를 「사립학교법」과 일치하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산학협력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직위) 등을 명시함.
-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의 경우 필요시 비전임교원을 소장 또는 공동소장으로 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함.
- 대학의 부속기관 중 ‘게임&평생교육원’이 ‘미래교육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한국어교육원 및 미래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해당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함.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비 고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관할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추가) ② ~ ③ (생략)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관할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 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동일)	<개정(안)과 동일>	사립학교법 통일
제25조 (임원 등 선임의 제한) ① (생략)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제25조 (임원 등 선임의 제한) ① (현행과 동일)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개정(안)과 동일>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비 고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u>1/3</u> 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 ⑩ (생략)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u>3분의 1</u> 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 ⑩ (현행과 동일)		문구 수정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 ② (생략)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u>서강대학교 총장</u> 을 겸하지 못한다.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u>사립학교의 장</u> 을 겸하지 못한다.	<개정(안)과 동일>	사립학교법 통일
제30조 (임원 겸직금지) ① ~ ② (생략)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 및 <u>서강대학교</u> 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30조 (임원 겸직금지)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 및 <u>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u> 의 교원이나 그 밖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안)과 동일>	사립학교법 통일
제92조의2 (산학협력단) ① 대학교 (<u>추가</u>)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별도 법인으로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신설>	제92조의2 (산학협력단) ① 대학교 <u>산하</u> 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별도 법인으로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③ <u>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거나 전문직능인으로 보한다.</u>	<개정(안)과 동일>	문구 수정 및 산학협력단장 직급(직위) 명시
제94조 (부속기관) ① (생략)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기숙사의 학사장은 교목교수로 보할 수 있고,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필요시 비전임교원을 (<u>추가</u>) 공동소장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94조 (부속기관) ① (현행과 동일)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기숙사의 학사장은 교목교수로 보할 수 있고,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필요시 비전임교원 <u>중 소장 또는</u> 공동소장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동일)	제94조 (부속기관) ① (현행과 동일)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기숙사의 학사장은 교목교수로 보할 수 있고, 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필요시 비전임교원을 <u>소장 또는</u> 공동소장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동일)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비 고
<p>제95조의3 (한국어교육원, <u>게임&평생</u>교육원) ① 한국어교육원, <u>게임&평생</u>교육원의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직능인으로 보할 수 있다.</p> <p>② 한국어교육원, <u>게임&평생</u>교육원에 필요한 부서와 팀을 둘 수 있으며, <u>부서장과 팀장 및 소속직원의 자격, 업무와 직제, 정원 등은 해당 기관의 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u></p> <p>③ <신설></p> <p>④ <신설></p>	<p>제95조의3 (한국어교육원, <u>미래</u>교육원) ① 한국어교육원, <u>미래</u>교육원의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직능인으로 보할 수 있다.</p> <p>② 한국어교육원, <u>미래</u>교육원에 필요한 부서와 팀을 둘 수 있으며, <u>팀장은 차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u></p> <p>④ <u>한국어교육원, 미래교육원 소속 강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u></p>	<개정(안)과 동일>	미래교육원 명칭 수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
<신 설>	<p><u>부 칙</u></p> <p>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 88차 개정)</p>	<개정(안)과 동일>	부칙 신설

(제안이사 우재명, 수정동의이사 조인영, 재청이사 이근상 / 찬성 9인, 반대 0인)

4.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이사회는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을 심의한 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개정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 주요 개정 내용 >

○ 제7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신설

- 이사회회의는 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의 내용을 반영함.

○ 제10조의2(이사회 녹음·녹취 파일의 관리) 신설

- 회의록 작성을 위해 간사가 회의 내용을 녹음·녹취한 경우 그 파일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조항의 신설에 따라 「이사회 녹음기 사용 규칙」은 폐지하고자 함.

○ 제12조(경비지원 등) 제1항

- ‘이사’를 ‘임원’으로 개정함.

< 수정 의결 내용 >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비고
<신 설>	제10조의2(이사회 녹음·녹취 파일의 관리) 간사가 제10조 제2항에 의거 회의 내용을 녹음·녹취한 경우 그 파일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관리한다. 1. 녹음·녹취 파일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2. 녹음·녹취 파일은 회의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사장은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회의의 녹음파일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의2(이사회 녹음·녹취 파일의 관리) 간사가 제10조 제2항에 의거 회의 내용을 녹음·녹취한 경우 그 파일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관리한다. 1. 녹음·녹취 파일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2. 녹음·녹취 파일은 차기 이사회 개최일까지 보관한다. 3. 이사장 및 이사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회의의 녹음파일을 청취할 수 있다.	이사회 녹음·녹취 파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제안이사 우재명, 수정동의이사 조인영, 재청이사 나현오 / 찬성 9인, 반대 0인)

5. 교원 및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이사회는 교원 및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을 심의한 후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 주요 개정 내용 >

- 제3조(교원징계위원단의 설치와 구성) 제7항
 - 교원징계위원단 위원의 해촉 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고, 교원징계위원단 위원을 이사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제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3항 및 제4항 신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 징계사건에 따라 교원징계위원단 위원이 아닌 자를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에 대해 정함.
 -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참고인, 관계 전문가 또는 위원 등 구성원에 대하여 회의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제14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신설
 -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제35조(재심위원의 구성 등) 제5항 신설
 - 위원회에 참석하는 참고인, 관계 전문가 또는 위원 등 구성원에 대하여 회의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사 우재명, 동의이사 조인영, 재청이사 전주희 / 찬성 9인, 반대 0인)

6. 학교법인 행정규정 개정의 건

이사회는 학교법인 행정규정 개정의 건을 심의한 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개정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 주요 개정 내용 >

- 제3조 (사무팀) 제2항

- 사무팀의 분장 내용 중 '구매 업무'를 삭제함.
- 제17조 (신규채용) 제2항 및 제19조 (계약직원의 임용) 제2항 신설
 - 신규 채용하는 법인 직원 및 임용하는 계약직원의 경력 및 직급 책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20조 (파견 등) 제목개정 및 제5항 신설
 - 제목을 개정하고, 파견을 포함한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39조 (법인 구매위원회) 제1항, 제2항, 제4항
 - 법인 구매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
- 제40조 (계약방법) 제1항 삭제 및 제2항 개정
 - 학교법인의 구매 업무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어, 계약방법 등 관련 내용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거나 삭제함.
- 제41조 (수의계약) 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 학교법인의 원활한 구매 업무를 위하여 계약방법 중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 제41조의2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 신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방법 중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 제43조 (서강대학교 규정 준용) 신설
 - 법인회계의 예산·통제에 관한 사항을 이사장이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정 의결 내용 >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비고
제17조 (신규채용) 법인 직원의 신규채용은 서강대학교 직원 신규채용 시 서강대학교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함께 실시하며,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최종 면접 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신규채용 업무를 대학에 위임할 수도 있다. <u>② <신설></u>	제17조 (신규채용) ① (현행과 동일) <u>② 제1항에 따라 신규 채용</u>	제17조 (신규채용) ① (현행과 동일) <u>② 제1항에 따라 신규 채용</u>	원활한 조직 구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비고
	<p><u>된 법인 직원의 경력 산정 및 직급 책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된 법인 직원의 경력 산정 및 직급 책정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제19조 (계약직원의 임용) ① (생략) ② <신설></p> <p>② 계약직원의 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서강대학교 “계약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한다.</p>	<p>제19조 (계약직원의 임용)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계약직원의 경력 산정 및 직급 책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계약직원의 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서강대학교 “계약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u>(제2항에서 이동)</u></p>	<p>제19조 (계약직원의 임용)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계약직원의 경력 산정 및 직급 책정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개정(안)과 동일)</p>	<p>원활한 조직 구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 신설 및 항 이동</p>

(제안이사 우재명, 수정동의이사 조인영, 재청이사 오진환 / 찬성 9인, 반대 0인)

7. 대학원 학칙 개정의 건

이사회는 대학원 학칙 개정의 건을 심의한 후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 주요 개정 내용 >

○ 제27조(학위과정의 연계)

- ‘전문대학원’을 추가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대학원별’ 세칙으로 정하도록 문구를 수정함.

(제안이사 우재명, 동의이사 이근상, 재청이사 김광호 / 찬성 9인, 반대 0인)

8. 교비회계 장기 미회수 채권 제각의 건

이사회는 교비회계 장기 미회수 채권 제각의 건을 심의한 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1) 미회수 채권 현황

GL계정	금액(원)	발생시기	내역	구분
학생채권 (11233020)	3,123,000	2020	외국인 학생(2인)의 무단 미등록에 따른 분납금 미수액	등
합계	3,123,000		잡손실 처리	

(2) 미회수 채권 제각 사유 및 처리 방안

- 등록금 미수금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 교육채권으로 법적으로 회수하기 어렵고, 학생과의 연락이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 대손상각처리(잡손실) 하고자 함.

(제안이사 우재명, 동의이사 전성빈, 재청이사 오진환 / 찬성 9인, 반대 0인)

9. 하비에르관(X관) 5층 베란다 공간 증축 공사 승인의 건

이사회는 하비에르관(X관) 5층 베란다 공간 증축 공사의 건을 심의한 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1) 증축 사유

- 아트&테크놀로지학과 1전공생 및 다전공생, 대학원생의 증가로 랩실 및 협업 공간이 부족하여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5층 베란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간 천장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옥상 공간이 폐쇄되면서 사용할 수가 없어, 옥상 공간이 아닌 실내 공간으로 증축 변경을 하여 해당 공간을 사용하고자 함.

(2) 증축 면적 및 용도

- 증축 면적 : 하비에르관(X관) 5층 베란다 공간 (86㎡ / 약 26평)

- 용도 : 서버 관리 공간 및 플렉서블한 오픈랩 공간

(3) 예상 비용 : 255,000,000원

(4) 기타 : 증축 공사 예상 비용은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임.

(제안이사 우재명, 동의이사 전주희, 재청이사 이근상 / 찬성 9인, 반대 0인)

10. 산학협력단 보유주식 매각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이사회는 산학협력단 보유주식 매각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을 심의한 후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 주요 개정 내용 >

- 제2조(매각의 기본원칙) 제3항 단서 추가 및 제4항 신설
 - 특별자문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매각 금액 기준(1억 원 이하)을 정하고, 주식 매각 업무와 매각 후 업무에 대한 주관 부서를 각각 구분 명시함.
- 제3조(비상장기업의 주식매각) 제2항
 - 제2조 제3항의 단서를 추가함에 따라 문구를 수정함.
- 제4조(상장기업의 주식매각)
 - '10배 이상'을 제외하고, 제2조 제3항의 단서를 추가함에 따라 문구를 수정함.
- 제6조(주식매각에 따른 사후관리)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주식 매각 수입금 처리 시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중인 각종 기금에 적립·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제안이사 우재명, 동의이사 전주희, 재청이사 이근상 / 찬성 9인, 반대 0인)

11. 학장 인준의 건

이사회는 자연과학대학장 인준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보 직 명	성 명	소 속	직 위	전임자	임명일	비고
자연과학대학장	이덕형	화학과	교수	-	2024.12.01	유임

(제안이사 우재명, 동의이사 이근상, 재청이사 나현오 / 찬성 9인, 반대 0인)

12. 교원 인사행정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의 건

이사회는 교원 보수 규정, 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세칙, 석학교수 규정 개정의 건 및 강의로 규정 제정의 건을 심의한 후 아래와 같이 교원 보수 규정을 수정하여 개정하고, 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세칙, 석학교수 규정 및 강의로 규정은 원안과 같이 제·개정할 것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1) 교원 보수 규정

< 주요 개정 내용 >

○ 제14조의2(직무정지기간중의 보수) 신설

-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14조(총장후보자의 추천방식 등) 제3항이 신설되어 총장후보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가 본교 총장인 경우에는 총추위가 총장예비후보자를 공고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총장직무대행 체제가 됨에 따라, 총장 직무대행 기간 동안의 총장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수정 의결 내용 >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비 고
<신 설>	<p><u>제14조의2(직무정지기간중의 보수) ① 현 총장이 총장 후보에 지원하여 총장직무가 정지된 경우 보직수당을 제외한 보수를 지급한다.</u></p> <p><u>② 직무정지기간 중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총장의 보직수당을 지급한다.</u></p>	<p><u>제14조의2(직무정지기간중의 보수) ① 재직 중인 총장이 차기 총장 후보에 지원하여 총장직무가 정지된 경우 보직수당을 제외한 보수를 지급한다.</u></p> <p>(제2항 개정(안)과 동일)</p>	신설

(2) 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세칙

< 주요 개정 내용 >

○ 제4조 (우수교수 선정 및 포상) 단서 추가

- 전임교원 업적평가를 통한 우수교원 선정 및 포상의 범위에 대하여 '대학(원)별 상위 30%' 조건과 관계없이,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실적 등 개별 우수 연구실적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대학 연구 성과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3) 석학교수 규정

< 주요 개정 내용 >

○ 제7조(임용기간)

- 로올라 석학교수의 재임용 기준에 대하여, 기존 임용기간인 3년간의 연구실적이 로올라 석학교수 신규 임용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가진 경우로 정하고자 함.

(4) 강의료 지급 규정

< 주요 제정 내용 >

- 2024년도(2023학년도분) 정기감사 발견사항(합반 수업 강의료 관련 규정 부재)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강의료 지급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받음에 따라, 강의료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합반 수업에 따른 강의료 지급 조항을 포함하고, 현재 교내에 지급되고 있는 강의료의 종류, 지급조건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제안이사 우재명, 수정동의이사 전주희, 재청이사 전성빈 / 찬성 9인, 반대 0인)

13. 2025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재계약/승진/정년보장 심사의 건

이사회는 2025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재계약,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의 건에 대해 심의한 후 아래와 같이 의결함.

(1) 2025학년도 1학기 재계약(정년보장) 및 재계약 대상자 심사

- ① 일반교원 재계약 심사 대상자 13명(정년보장 1명 포함)의 재계약을 아래와 같이 의결함.
- ② 강의전담교원 재계약 심사 대상자 4명의 상위 직급 재계약을 아래와 같이 의결함.

소 속	성 명	현 직위	의결 사항
중국문화학과	김보경	부교수	재계약 의결
영문학부(영미어문전공, 미국문화전공)	안학영	조교수	재계약 의결
유럽문화학과	김지현	조교수	재계약 의결
경제학과	김인경	부교수	재계약 의결
경제학과	김재호	부교수	재계약 의결
경제학과	곽준희	조교수	재계약 의결
물리학과	백현준	조교수	재계약 의결
화학과	동방선	조교수	재계약 의결
화학과	장지현	조교수	재계약 의결
전자공학과	김시현	조교수	재계약 의결
컴퓨터공학과	이주호	조교수	재계약 의결
신학대학원	홍경자	부교수	재계약 의결
메타버스전문대학원	박상훈	교수	재계약(정년보장) 의결
전인교육원	오경숙	조교수	상위 직급 재계약 의결
전인교육원	박숙자	조교수	상위 직급 재계약 의결
전인교육원	이상헌	조교수	상위 직급 재계약 의결
전인교육원	최현순	조교수	상위 직급 재계약 의결

- ③ 산학협력중점교원 재계약 심사 대상자 1명의 재계약을 아래와 같이 의결함.

소 속	성 명	현 직위	의결 사항
메타버스전문대학원	최승관	조교수	재계약 의결

(2) 2025학년도 1학기 승진 및 정년보장 대상자 심사

①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 대상자 3명의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을 아래와 같이 의결함.

소 속	성 명	현 직위	의결 사항
심리학과	석혜원	부교수	승진/정년보장 의결
전자공학과	김상완	부교수	승진/정년보장 의결
기계공학과	김남근	부교수	승진/정년보장 의결

② 부교수 승진 심사 대상자 11명의 부교수 승진을 아래와 같이 의결함.

소 속	성 명	현 직위	의결 사항
국어국문학과	황윤정	조교수	승진 의결
심리학과	김현식	조교수	승진 의결
경영학부(경영학전공)	김민	조교수	승진 의결
화공생명공학과	김형준	조교수	승진 의결
기계공학과	정석환	조교수	승진 의결
기계공학과	김상엽	조교수	승진 의결
전자공학과	남창주	조교수	승진 의결
컴퓨터공학과	문의현	조교수	승진 의결
국제대학원	Kim, Hannah June	조교수	승진 의결
법학전문대학원	김지연	조교수	승진 의결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전재호	조교수	승진 의결

(제안이사 우재명, 동의이사 이근상, 재청이사 나현오 / 찬성 9인, 반대 0인)

14. 2025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의 건

이사회는 2025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의 건에 대해 심의한 후 아래와 같이

의결함.

(1) 2025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특별초빙)의 건

최종면접에 합격한 장두성, 김장생, 김보혁, Zeljana Zmire, Legor Vyshnevski, Nan Zhou, 이재철 후보자의 신규임용을 의결함.

소 속	전공 분야	성 명	트랙구분	임용직위	임용일자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 전분야	장두성	비정년트랙	부교수	2025.3.1.
공과대학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김장생	정년트랙	조교수	2025.3.1.
글로벌법무학과	국제법 또는 미국법	김보혁	비정년트랙	부교수	2025.3.1.
게페르트국제학부	국제학(국제관계, 국제경제, 국제경영, 재무)	Zeljana Zmire	비정년트랙	조교수	2025.3.1.
		Legor Vyshnevski	비정년트랙	조교수	2025.3.1.
글로벌융합학부	미디어학	Zhou, Nan	비정년트랙	조교수	2025.3.1.
경제학과	AI와 빅데이터 방법론을 활용한 기후, 환경, 보건, 학제간 융합연구	이재철	정년트랙	조교수	2025.3.1.

(2) 2025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일반초빙)의 건

최종면접에 합격한 신희종, 최은표, 오영인, 김용찬, 한서정, 이화란, 조운호, 성연진, 정해동, 이선옥 후보자의 신규임용을 의결하며, 조운호 후보자의 임용은 2025학년도 2학기로 연기함.

소 속	전공 분야	성명	트랙구분	임용직위	임용일자
화공생명공학과	에너지전환 화학공학	신희종	정년트랙	조교수	2025.3.1.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전분야	최은표	정년트랙	교수	2025.3.1.

소 속	전공 분야	성명	트랙구분	임용직위	임용일자
사학과	미국사	오영인	정년트랙	조교수	2025.3.1.
	동아시아사	김용찬	정년트랙	조교수	2025.3.1.
화학과	유기화학	한서정	정년트랙	조교수	2025.3.1.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 및 컴퓨터공학 전분야	이화란	비정년트랙	조교수	2025.3.1.
경제학과	ESG, 빅데이터 경제 (환경/산업/공공/노동/ 거시/국제/금융/계량)	조운호	정년트랙	부교수	2025.9.1.
경영학/ 경영전문대학원	마케팅	성연진	정년트랙	조교수	2025.3.1.
아트& 테크놀로지학과	생성인공지능 및 컴퓨터 비전	정해동	정년트랙	조교수	2025.3.1.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Spatial Computing(AR/VR/MR), Generative/Human-Cente red AI, Computer Graphics 응용 등)	이선옥	정년트랙	조교수	2025.3.1.

(제안이사 우재명, 동의이사 나현오, 재청이사 전성빈 / 찬성 9인, 반대 0인)

15. 기타 - 회의록 간인의 건

이사회는 회의록 간인에 관한 건을 심의한 후 우재명 이사장, 김광호 이사, 조인영 이사를 간인 임원으로 호선함.

(제안이사 우재명, 동의이사 이근상, 재청이사 나현오 / 찬성 9인, 반대 0인)

□ 보고 안건

16.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건의사항 제출의 건

이사회는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총장후보자 선출 이후 논의한 건의 사항을 보고 받음.

17. 교원 인사 관련 보고의 건

이사회는 전임교원 퇴직 및 명예교수 추대 명단, 2024학년도 제4차 이사회 이후 임명된 보직자 명단(14명), 2024학년도 2학기 강사 신규임용 현황 및 명단(25명)을 보고 받음.

18. 대학 인문역량강화사업(CORE) 학업지원금 반환의 건

이사회는 대학 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의 학업지원금 반환에 관한 내용 및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음.

< 차기 이사회는 2025년 2월 12일 (수)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함. >

우재명 이사장은 2024년 12월 6일 오후 5시 35분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를 선언함.

회의록 작성일 : 2024년 12월 6일

회의록 작성자 : 간사 이희진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이사장	우재명	우재명
	이사	김광호	김광호
	"	나현오	나현오
	"	오진환	오진환
	"	이근상	이근상
	"	전성빈	전성빈
	"	전주희	전주희
	"	조인영	조인영
	"	최현만	최현만
	"	한상대	한상대
	감사	고희관	고희관
	"	양호승	양호승